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0호, 2025. 1. 31.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시설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34조, 제34조의2, 제47조의2, 별표 1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협회의 설립) ① (생략)	제10조(협회의 설립)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4조(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 ④ (생략)	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행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내게 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이하 이 조, 제34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 “존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존치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하는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삭 제>
⑥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시설물별 존치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① 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삭 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하여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서	

면으로 알릴 것

가. 공공시설의 명칭

나. 설치비용의 총액

다. 내야 할 금액

라.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2. 제1호에 따른 서면 통지 전에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
의 의견을 들을 것

②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존치시설의 소유자
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야 한다.

③ 존치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④ 시행자는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그 존치시설부
담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
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
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3. (생 략) 4. 제3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2 017년 1월 1일 5. · 6. (생 략)	----- --.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연 락 처	(044) 201 - 4010